



연구개발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

[시행 2021. 1. 1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-107호, 2021. 1. 1., 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성과평가정책과), 044-202-6926

1. 연구개발성과 관리·유통 제도 운영기관 지정

○ 지정기관 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(www.kistep.re.kr/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)

○ 담당업무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33조제7항에 의한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협의체의 체계적 운영 지원

2. 분야별 연구개발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

가. 논문

○ 지정기관 :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paper.kisti.re.kr/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)

○ 담당업무 :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 중 국내·외 논문정보의 관리·유통체계 구축·운영

나. 특허

○ 지정기관 : 한국특허전략개발원(www.ripis.or.kr/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8층)

○ 담당업무 :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 중 국내·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의 관리·유통체계 구축·운영

다. 보고서원문(전자원문 포함)

○ 지정기관 :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nrms.kisti.re.kr/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)

○ 담당업무 :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 중 보고서 원문의 관리·유통체계 구축·운영

라. 연구시설·장비

○ 지정기관 :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(www.zeus.go.kr/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-148)

○ 담당업무 :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 중 연구시설·장비의 관리·유통체계 구축·운영

마. 기술요약정보

○ 지정기관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(www.ntb.kr/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)

○ 담당업무 :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 중 기술요약정보*의 관리·유통체계 구축·운영

* 기술의 주요 내용, 특징 및 기술이전 조건 등 기술정보를 요약한 것

바. 화합물

○ 지정기관 : 한국화학연구원(www.chembank.org/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)

○ 담당업무 :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 중 화합물 및 관련 정보의 관리·유통체계 구축·운영

사. 생명자원

○ 지정기관 : 한국생명공학연구원(정보 : www.biodata.kr/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, 식물 : biorp.kribb.re.kr/전라북도 정읍시 입신길 181)

※ 생명자원의 관리·유통 전담기관은 「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, 생명자원법)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,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

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 보존기관(<붙임 1> 참조)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 기탁할 수 있다.

○ 담당업무 :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 중 생명자원 및 관련 정보의 관리·유통체계 구축·운영
 아. 소프트웨어

○ 지정기관 :

- 한국저작권위원회(저작권, www.cros.or.kr/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)
- 정보통신산업진흥원(기술상세정보, www.swbank.kr/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)

○ 담당업무 :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 중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의 관리·유통체계 구축·운영
 자. 표준

○ 지정기관 :

- 한국표준협회(www.rndstandard.or.kr/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)
-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rnd.tta.or.kr/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)
- 한국표준과학연구원(측정표준 : eshop.kriss.re.kr, 참조표준 : www.srd.re.kr/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)

○ 담당업무 :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 중 표준 및 관련 정보의 관리·유통체계 구축·운영

3. 지정요건

전담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함

- 가. 연구개발성과 수집·관리·유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
- 나. 연구개발성과 수집·관리·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
- 다. 연구개발성과 수집·관리·유통업무와 관련하여,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

4. 지정의 취소

가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 관리·유통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.

- 1) 지정요건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 실적이 미흡한 경우
- 2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3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
- 3)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요구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

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기관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이양을 요청할 수 있음

5. 기타

가.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담당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, 연구개발성과 수집·관리·유통에 필요한 교육·홍보 활동을 해야 함

나.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업무실적을 보고하고,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취소, 정지, 개선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(실적보고 양식<붙임 2> 참조)

다. 단, 전담기관 지정 당해에는 6개월 이내에 현황을 보고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

라. 문의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044-202-6923

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센터 043-750-2649

부칙 <제2020-107호, 2021. 1. 1. >

제1조(시행일)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-58호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를 2020년 12월 31에 폐지한다.